

A I 교 육
중앙 속으로

2021

BECAUS

2021학년도 3월 입학
중앙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2021학년도 3월 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7. 20.(월)~22.(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admission.cau.ac.kr
합격자 발표	2020. 9. 21.(월) 14:00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30.(수) (각 일자별 09:00~16:00)	

※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계열	소재지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소재지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2	자연	서울	경영경제 대학	산업보안학과(자연)	1			
			영어영문학과	3			자연과학 대학	물리학과	1			
			유럽 문화학부	독일어문학				1	화학과	2		
				프랑스어문학				1	생명과학과	3		
				러시아어문학				1	수학과	1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어문학				1	공과대학	사회기반 시스템공학	도시시스템공학	1
			중국어문학	2				시스템공학		건설환경플랜트공학	1	
		철학과	1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		2		
		역사학과	1				건축공학-4년제	1				
		정치국제학과	3				화학신소재공학부	3				
		공공인재학부	3	기계공학부			4					
		심리학과	2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					
		문헌정보학과	1	창의ICT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4				
		사회복지학부	2				융합공학부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	소프트웨어 대학			소프트웨어학부	4				
		사회학과	2				적십자 간호대학	간호학과(자연)	3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	의과대학				의학부	2			
		교육학과	1				소계			37		
		유아교육과	1	서울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¹⁾	1			
		경영학부(경영학)	5				안성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패션 ¹⁾	1		
		경영학부(글로벌금융)	2	소계				2				
		경제학부	3	예체능								
		응용통계학과	2									
		광고홍보학과	2									
		국제물류학과	2									
		산업보안학과(인문)	1									
		소계			49							

1) 체육교육과, 디자인학부(패션전공)은 실기고사 없이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 2016.06.13.~2021.06.12.]

의과대학은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기간 획득 [인증기간 : 2019.03.~2023.02.]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단위 명칭 및 모집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¹⁾

계열	소재지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소재지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모집 단위별 약간 명	자연	서울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자연)	모집 단위별 약간 명
			영어영문학과						
			독일어문학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철학과						
			역사학과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경영학부(경영학)							
		경영학부(글로벌금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인문)							

1) 북한이탈주민은 모집단위별 1명 이내로 선발합니다(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2) 의학부는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2명 이내로 선발하며(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3) 디자인학부(패션전공)는 실기고사 없이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 교육평가인증: 의과대학은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기간 획득 [인증기간 : 2019.03.~2023.02.]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단위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전형방법

계열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인문, 자연, 예체능 ¹⁾	서류평가100%		
의학부	1단계 (5배수선발)	서류평가100%	
	2단계	1단계 성적60%, 심층면접(지성)40%	

1) 체육교육과는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에서만 선발합니다.

※ 서류심사는 학업성취도, 자기소개서 및 학업능력 입증서류 일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의학부 심층면접(지성)은 전공적합성과 기초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화학, 생명과학 교과 통합형으로 출제합니다.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1) 자격요건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 외국 재학·근무·체류 기간에 제시한 기간을 충족하는 자(검정고시 제외)

※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2) 외국 재학·근무·체류 기간

외국학교 재학 형태	구 분	기 간*		
		근 무가)	재 학나)	체 류다)
고교과정 1개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당국에서 연속(비연속) 이수	보호자	3년	-	1개 학년마다 2/3이상
	보호자의 배우자	-	-	
	학 생	-	3년	1개 학년마다 3/4이상

※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지원자의 재학 기간 (고교 1개년을 반드시 포함) 중 겹치는 기간을 재외국민 기간으로 인정하며, 이 기간이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을 만족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휴교, 격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학, 체류가 어려운 경우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가) 해외 근무기간

- 해외에서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재직 한 기간
- 재직증명서 등으로 해외 근무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 해외 재학기간

- 보호자의 해외 근무 국가와 동일한 국가 소재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으로 고교 1개년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재학기간 인정 기준
 -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했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재학증명서 등으로 해외 재학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 해외 체류기간

- 해당국에서 체류한 기간으로 출입국사실기록증명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보호자와 그의 배우자는 1개 학년마다 2/3 이상, 지원자는 1개 학년마다 3/4이상 해당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방학, 휴일 등을 제외한 학기 중에는 해당국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 인정 기준(1개 학년 기준)
 -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했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1개 학년으로 함.
 -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1개 학년으로 함.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자격요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해외 정규고교 졸업(예정)자 (귀화한 외국인 포함, 초, 중, 고교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
 - ※ 복수 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방학, 휴일 등을 제외한 학기 중에는 해당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휴교, 격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학, 체류가 어려운 경우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북한이탈주민

- 자격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 검정고시 지원가능)
 - ※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재외국민의 휴교·휴업 기간 인정

가.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해외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나. 기간

- 학교(학생)의 휴교 기간 및 직장(해외근무자)의 휴업 기간

다. 적용

- 해당 휴교, 휴업 기간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시 재학, 체류, 재직 기간 등으로 인정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 등은 대학이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함.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 서류

서류제출 방법

2020. 7. 20.(월)~27.(월) 18:00까지 온라인 제출

- 단, 온라인 제출은 용량제한이 있으며 용량을 초과하거나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우편제출을 허용합니다.

제출서류

번호	구분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해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비 고
1	입학원서	○	○	○	• 원서접수 시 직접 입력
2	지원자격 심사신청서	○	○	○	
3	자기소개서	○	○	○	
4	학력조회뢰서 및 학력조회동의서	○	○		
5	초·중·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 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 부모이혼사: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모사망사: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7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			• 본사 인사권자 발행 • 외국 근무경력기간 필히 명시
8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필히 제출
9	해외지사설치인증허가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서(허가서)	△			• 해외 파견 재직자 필히 제출
10	세금 납입 이력 및 납부 영수증	△			• 현지 취업자: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 이력 또는 해외 세금 납부영수증 • 현지 자영업자: 해외 세금 납부증명서
11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			• 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12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학생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13	신분증 사본(여권 등)(부,모,학생)	○	학생		
14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	학생		
15	제3국 수학사유서	△			• 해당자에 한함
16	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	△		• 해당자에 한함
17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시군구청 발행
18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시군구청 발행
19	고등학교 학력 확인서			○	•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 발행 • 국내고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필수)
20	학업능력 입증서류 요약서	△	△	△	• 제출 희망자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별도 제출 없음)
21	학업능력 입증서류	△	△	△	• 제출 희망자 - 총 10매(단면)이내로 제출 가능
22	교사추천서	△	△	△	• 제출 희망자 • 본교 양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학교 양식으로 제출 가능
23	School Calendar (※학기 개시/종료일이 명시된 서류)	○	○		• 전·편입 시 해당 학년도·학기의 School Calendar 제출 - 학기 개시/종료일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 또는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서류는 사본과 함께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어 번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초·중·고교 과정 중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성적증명서와 재학사실 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제출로 갈음합니다.
-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졸업예정자 등 조건부 자격 충족자는 합격 후에 2021.2.26.(금)까지 자격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안내

- 1) 제출대상 :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최종합격자
- 2) 제출기한 : **2021. 2. 26.(금)**
- 3) 제출방법 : 합격자 전원 우편제출
- 4) 대상서류 : ① 해외 초·중·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영사 확인 서류 제출)
② 최종 학기 성적증명서 및 고교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영사 확인 서류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5) 제출서류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6)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 및 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등의 경우 당해 학교장 직인으로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갈음합니다. / 문의처 : 외교부(02-2100-2114, 02-3210-0404)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및 원본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 후 파쇄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 안내

평가 방법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평가 방향

-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쌓아온 자기주도적 활동 경험을 평가합니다.
-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활동에서 발휘한 학업 소양을 면밀히 살핍니다.
- 교육활동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중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대학에서 원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펜타곤 평가 모형의 활용

- 중앙대학교는 본교의 인재상인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펜타곤 평가 모형을 활용합니다.
- 펜타곤 평가요소는 학업 역량, 학업적응역량, 탐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요소의 핵심 역량을 균형적으로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 펜타곤형 평가 모형



평가요소별 세부 설명

평가요소	세부 내용
학업 역량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합니다.” 학업역량은 지원자의 중·고교 학업성취도를 기초 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단순히 성취 수준만으로 지원자를 줄 세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교과 성취도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 현황,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업적응 역량	“낮선 환경에서의 적극적인 학업 참여 노력과 태도를 평가합니다.” 학업적응역량은 지원자가 속한 국내·외의 다양한 학업 환경에서의 적응하려는 노력과 성취 수준을 평가합니다. 지원자의 학업적응역량은 단순히 교과 성취도의 향상 또는 하락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낮선 학습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업에 참여한 노력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탐구 역량	“학업과 전공(계열) 대한 흥미와 열정, 학업에 대한 노력과 탐구능력을 평가합니다.” 탐구역량은 지원자의 수업활동, 교내 수상, 독서, 탐구활동 등 중·고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업 관련 활동을 평가자료로 활용합니다. 지원자가 수행한 활동은 단순히 양적·경험적 측면에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탐구 활동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태도, 지적 수준과 깊이 있는 사고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의사소통 역량	“언어소통능력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개방적 사고를 평가합니다.” 의사소통역량은 학교 생활을 통해 쌓아온 외국어 활용 능력과 타문화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 다양성에 대한 수용 의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의사소통역량은 단순히 외국어 성적이나 다문화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의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교 활동 사례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도 의사소통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평가요소입니다.
공동체 역량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과 리더십, 협력정신을 평가합니다.” 공동체역량은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리더십, 협력정신을 평가합니다. 공동체역량은 학교 생활에서 학업, 동아리, 학생회,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단체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지원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리더십과 협력정신,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지원자의 인성적인 측면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사례 안내

사례 안내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 해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충족을 전제 (해당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 CASE 1 (온전한 학기 이수)

- 학사일정 : G10(2017.08.01.~2018.06.23.) G11(2018.08.01.~2019.06.23.) G12(2019.08.01.~2020.06.23.)
- 재학기간 : G10(2017.08.01.~2018.06.23.) G11(2018.08.01.~2019.06.23.) G12(2019.08.01.~2020.06.23.)
- 해외근무자 재직기간(발령일 기준) : 2017.08.01.~2020.07.31.

Q_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A_ 2017.08.01.~2020.07.31.

원칙 -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

단, 상기 사안처럼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온전한 학기를 이수한 자)의 경우 학기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재학 기간으로 인정

Q_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A_ 2017.08.01.~2020.07.31.

Q_ 해외체류일수 산정 기준

A_ G10(2017.08.01.~2018.07.31.) G11(2018.08.01.~2019.07.31.) G12(2019.08.01.~2020.07.31.)

Q_ 학생이 G12 학기 수료 후 2020.06.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A_ G12(2019.08.01~2020.07.31.)동안 해외체류일수 3/4 충족한 경우 충족

Q_ 해외 근무자의 배우자가 학생과 함께 2020.06.25.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A_ G12(2019.08.01~2020.07.31.)동안 해외체류일수(2/3)를 충족한 경우 충족

Q_ 해외 근무자가 2020.06.26.(발령 종료일 2020.06.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A_ 미충족 (해외 재직 기간이 3년(1,095일)을 충족하지 않음. 해외근무자는 2020.07.31.까지 재직해야 함.)
G12(2019.08.01~2020.07.31.)동안 해외체류일수(2/3)를 충족하더라도 지원 자격 미충족

▶ CASE 2 (G9 중간에 편입한 경우)

- 학사일정 : G9(2017.08.01.~2018.06.23.) G10(2018.08.01.~2019.06.23.) G11(2019.08.01.~2020.06.23.)
- 재학기간 : G9(2017.09.01.~2018.06.23.) G10(2018.08.01.~2019.06.23.) G11(2019.08.01.~2020.06.23.)
- 해외근무자 재직기간(발령일 기준) : 2017.09.01.~2020.08.31.

Q_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A_ G9(2017.09.01.~2018.06.23.) G10(2018.08.01.~2019.06.23.) G11(2019.08.01.~2020.06.23.)
G12(2020.08.01.~2020.08.31.)

- G9를 한 달 늦게 편입하였으므로 G12 1달을 추가적으로 재학해야 함.

Q_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 기준

A_ 2017.09.01.~2020.08.31.

Q_ 해외체류일수 산정 기준

A_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1년(약 365일) 되는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
기준일 1) (2017.09.01.~2018.08.31.), (2018.09.01.~2019.08.31.), (2019.09.01.~2020.08.31.)
기준일 2) G9(2017.09.01.~2018.07.31.) + G12(2020.08.01.~2020.08.31.),
G10(2018.08.01.~2019.07.31.), G11(2019.08.01.~2020.07.31.)
• 기준일 1) 또는 2) 중 학생, 해외근무자 및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체류일수 산정

▶ CASE 3 (G10 중간에 편입한 경우)

- 학사일정 : G10(2017.08.01.~2018.06.23.) G11(2018.08.01.~2019.06.23.) G12(2019.08.01.~2020.06.23.)
- 재학기간 : G10(2017.09.01.~2018.06.23.) G11(2018.08.01.~2019.06.23.) G12(2019.08.01.~2020.06.23.)
- 해외근무자 재직기간(발령일 기준) : 2017.09.01.~2020.08.31.

Q_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A_ G10(2017.09.01.~2018.06.23.) G11(2018.08.01.~2019.06.23.) G12(2019.08.01.~2020.06.23.)

- 2020.06.23. 졸업으로 1달 부족분을 채울 수 없으므로 재학기간 미충족, 지원 불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FAQ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FAQ

• 복수 지원 허용 범위

Q_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시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나요?

A_ 네,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습니다. 9월 학기 입학모집도 해당년도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습니다.

• 학력 관련

Q_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_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검정고시는 인정)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수업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Q_ 월반 인정 기준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_ 전편입 과정 중 월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학교 내 월반은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여부는 우리 대학 내부 지침을 통해 결정됩니다.

Q_ 해외 중고교과정에서 3개 학년(6개 학기)만 지원 자격으로 판단하나요?

A_ 아닙니다. 해외 중고교과정도 24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은 1학기에 한해 인정합니다.

Q_ 누락된 학기가 3개 있고 중복된 학기가 2개 있습니다. 중복된 학기로 누락된 학기를 대체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_ 네, 가능합니다. 단,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일 경우는 누락된 1개 학기로만 대체할 수 있으며, 누락 사유에 따라 대체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자격 충족 예시

[D : 국내학교, A :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G2 2개 학기 중복 중 한 학기만
G4-2학기 누락에 대체

→ G7-1학기 중복을 G9-1학기 누락에 대체

→ 학제차이 누락 인정

• 지원 자격 관련

Q_ 복수 국적자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_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Q_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해외 근무자의 재직 기간 및 학생의 재학 기간은 연속, 비연속 불문인가요?

A_ 네, 연속/비연속 불문하고 재직/재학/체류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Q_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보호자가 휴직을 하고 해외 유학을 했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_ 유학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국민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_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해외 근무자가 해외 파견 종료 후 해당국에서 인수 인계 등의 사유로 체류 했습니다.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나요?

A_ 재직증명서 상 명시 되어 있는 해외 근무 기간만 해외 재직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 출장 등은 해외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Q_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해외 체류 일수 산정 시 소수점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A_ 소수점은 절사해서 산정합니다. 부모는 243일, 학생은 273일입니다.

Q_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해외 체류 일수 산정 시 방학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A_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해외근무자 및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관련

Q_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_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필수 서류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 2조, 제4조에 의거하여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면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7조에 의거하여 재외국민 등록자는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사 24(<https://consul.mofa.go.kr>)에서 온라인으로 재외국민 등록, 등본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Q_ 현지 취업자입니다. 법인세 서류는 회사 기밀이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_ 현지에서 발급받은 개인 소득세 관련 서류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6393 **FAX** (02)813-8158
<http://admission.cau.ac.kr>